
V. 결론

보험업은 대수의 법칙과 단체성에 기반한 사업모형을 가지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통계의 집적이 보험료 산출에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공동행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거대재해와 같은 특정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담보하기 위한 공동인수 등도 보험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EU, 일본 모두 이러한 보험업의 특수성에 근거한 독점규제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규제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문규제당국의 명령과 지침 등은 보험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문규제는 시장경쟁 외에도 고려하는 정책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며, 규제산업에 대한 독점규제 적용은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이러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규제와 독점규제라는 이원적 규제가 피규제기관인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 경감을 위한 핵심은 규제당국 간의 의견조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국 간 선 의견조율, 후 법집행으로 이원적 규제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시장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의 개선방안으로 경쟁규제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정비, 전문규제의 우선적 관할권 명확화, 그리고 가격경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바탕 위에 이원적 규제로 인한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시장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원적 규제로 인한 법규리스크의 증가와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한 사회후생의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계량적으로도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